

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30일			
신 청 인	명 칭								
	고 유 번 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	대 표 자				
	전 화 번 호				팩 스				
	주 소		(우편번호: -)						
신청사업 개 요	사 업 추 진 계 획		1. 2. 3. 4. 5. 6. 7.						
			총 개 사업						
			사 업 비		백만원		보 조 금		천원(%)
							자기부담금		천원(%)
			담 당 자		직위: 성명:		전 화 (휴 대 폰)		
전자우편									

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통일부장관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1부 2.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3.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. 사업계획서(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합니다)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부 등본 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